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2018. 10. 5.(금) 14:30 ~ 17:30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

주관_ 이주와 인권연구소

주최_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국 20개 이주인권단체 및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4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일터와 숙소의 사진도 보내주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요?

프로그램

사회 : 이은혜 (아시아의 창)

시 간	프로그램
14:30~14:40 (10분)	[인사말]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4:40~15:20 (40분)	[모니터링 결과발표] ·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15:20~16:20 (60분)	[정책제언 토론] ·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박정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이종민 (파주 이주노동자센터 살롬의 집) · 이현서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16:20~16:30 (10분)	[휴식시간]
16:30~17:30 (60분)	[종합토론 및 정리]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 요약

이주와 인권연구소

I. 실태조사의 개요

1) 실태조사의 배경 및 목적

이주노동자들은 안전시설이나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화재나 범죄에 취약하고 건강에 유해할 뿐 아니라 주거용으로 지어지지도 않은 임시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일부 업종에서는 이러한 기숙사에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지속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숙소비 공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7년 2월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발표하면서, 최소기준 이하의 시설을 주거용 기숙사로 인정하는 한편 통상 임금의 일정 비율을 숙소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숙사비 공제를 최저임금 삭감의 방편으로 이용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정당화시켰다.

한편, 2018년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숙사비 공제 관행은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려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하는 현장의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전국적, 전 업종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노동조건 및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실태조사와 캠페인”을 공동으로 기획하게 되었다.

본 실태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열악한 주거와 생활환경,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한 숙소비 공제 실태,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전후의 변화를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밝힌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외부에 알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성과 권리의식을 높인다.

셋째,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의 인권단체들이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조사결과를 이용해 지역별로 릴레이 발표회를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게 동등한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권고 실행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확고하게 한다.

2)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실태조사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전국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는 기본 인적사항, 노동조건, 숙식조건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전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문항이 작성되었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1> 설문조사의 구성

구분	문항 내용
기본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 성별, 연령, 체류자격, 국내 거주지역, 국내 거주기간
노동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 업종, 현 직장 근무기간 • 노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휴일 •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월급, 최저시급 수령 여부, 2018년 임금 인상 여부 • 노동조건의 변화
숙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소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거주 여부, 숙소 유형, 숙소 위치, 침실 공유 인원수 - 화장실, 욕실, 부엌 상태 및 잠금장치 유무 - 냉난방, 소방, 채광, 환기, 방충시설 유무 - 유해물질 노출 유무 및 기타 숙소 상태 - 숙소비 납부 여부 및 비용 • 식사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제공 여부 및 비용 - 식사에 대한 평가 • 숙식비 징수 방법 및 동의서 작성 여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의견 및 건의 사항

설문지는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해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타이, 파키스탄 언어까지 총 16개 언어로 제작되었다. 설문조사는 실태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전국의 20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및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직접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진행했다.

지역별 설문조사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표 I-2> 설문조사 참여 단체

지역	조사참여단체
서울·경기·인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 이웃살이,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대전·세종·충남·충북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대구·경북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성서공단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	녹산노동자 희망찾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울산이주민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가톨릭이주노동자센터

2018년 4월부터 8월에 걸쳐 수거된 설문지는 모두 1,461부였으나 그 중 무응답이 많거나 응답에 일관성이 없거나 응답자가 귀화자나 E-10 비자 소지자 등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1,215부만을 분석에 포함했다.

사례조사는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숙식비 공제 동의서, 기타 노동조건 및 숙식관련 합의서와 숙소 사진 등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례는 실태조사 공동참여 단체의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 상담과정에서 수집하기도 했고, 직접 이주노동자들의 직장과 숙소를 방문해 수집하기도 했다.

II. 실태조사 결과

1) 기본 인적사항

설문응답자 1,215명의 국적은 총 18개였으며, 국적별 분포는 <표 II-1>과 같다.

<표 II-1. 설문응답자의 국적 (n=1,215)>

국적	인원수 (명)	비율 (%)	국적	인원수 (명)	비율 (%)
네팔	161	13.3	우즈베키스탄	50	4.1
베트남	151	12.4	태국	43	3.5
필리핀	150	12.3	중국	31	2.6
캄보디아	144	11.9	파키스탄	28	2.3
스리랑카	119	9.8	키르기스스탄	11	0.9
방글라데시	101	8.3	러시아	2	0.2
미얀마	87	7.2	동티모르	1	0.1
몽골	70	5.8	나이지리아	1	0.1
인도네시아	64	5.3	르완다	1	0.1
			합계	1215	100.0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남성이 85.7%(1,041명), 여성이 14.2%(173명)로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평균 나이는 만 31.4세였는데 응답자의 대다수인 89.0%가 20~30대였다.

체류자격을 비자유형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으로 전체의 83.6%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등록 체류자가 8.2%, 특정활동(E-7)이 2.3%, 결혼이민(F-6)이 1.6% 순이었다. 분석에서는 체류자격을 크게 비전문취업(E-9, H-2), 전문취업(E-7), 장기거주(F-2, F-4, F-5, F-6), 기타(G-1비자 소지자, 유학생, 단기체류비자 소지자 등), 미등록 체류의 5가지로 나누었다.

체류자격과 성별을 모두 응답한 1,212명의 인적사항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설문응답자의 체류자격과 성별 분포 (n=1,212)

체류자격	남성		여성		합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비전문취업	916	88.1	105	61.0	1,021	84.2
전문취업	26	2.5	2	1.2	28	2.3
장기거주	12	1.2	22	12.8	34	2.8
기타	20	1.9	10	5.8	30	2.5
미등록체류	66	6.3	33	19.2	99	8.2
합계	1,040	100.0	172	100.0	1,212	100.0

설문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서울·경기·인천이 37.4%(45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산·울산·경남 36.0%(437명), 대전·세종·충남·충북 14.7%(178명), 대구·경북 9.3%(113명), 광주·전남·전북 2.2%(27명)이 뒤를 이었다. 제주 거주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설문응답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5년 이상이 26.1%(316명)로 가장 많았다. 3년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이 47.3%, 3년 이상이 52.7%로 비슷했다.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모두 응답한 1,211명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표 II-3>과 같다.

<표 II-3> 설문응답자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 (n=1,211)

체류기간 \ 체류자격		비전문 취업	전문취업	장기거주	기타	미등록 체류	합계
1년 미만	명	127	2	2	9	7	147
	%	12.4%	7.1%	5.9%	30.0%	7.1%	12.1%
1년~2년	명	157	4	1	8	12	182
	%	15.4%	14.3%	2.9%	26.7%	12.2%	15.0%
2년~3년	명	222	5	1	6	10	244
	%	21.7%	17.9%	2.9%	20.0%	10.2%	20.1%
3년~4년	명	147	1	3	1	6	158
	%	14.4%	3.6%	8.8%	3.3%	6.1%	13.0%
4년~5년	명	147	2	2	1	13	165
	%	14.4%	7.1%	5.9%	3.3%	13.3%	13.6%
5년 이상	명	221	14	25	5	50	315
	%	21.6%	50.0%	73.5%	16.7%	51.0%	26.0%
합계	명	1,021	28	34	30	98	1,21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예상대로 장기거주 비자 소지자들의 평균적인 체류기간이 가장 길어 3년 이상 체류자가 대부분(88.2%)이었으며,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도 73.5%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민으로 분류되는 비전문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3년 이상 체류자가 50.4%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5년 이상 체류자도 21.6%로 적지 않았다. 전문 취업비자 소지자와 미등록 체류자

는 5년 이상 체류자가 각각 50.0%와 51.0%로 절반 이상이였다.

2) 노동조건

(1) 업종과 근무기간

설문응답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88.0%가 제조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4.5%), 농축산업(4.3%), 서비스업(1.9%), 어업(0.5%) 순이었다. 이후 분석에서는 농축산업과 어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했다.

업종과 성별을 모두 응답한 1,213명에 대한 업종별 성별 분포는 <표 II-4>와 같다.

<표 II-4> 업종별 성별 분포 (n=1,213)

업종	인원수 (명)			비율 (%)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제조업	943	124	1,067	88.4	11.6	100.0
건설업	53	2	55	96.4	3.6	100.0
농축산업	21	31	52	40.4	59.6	100.0
어업	6	0	6	100.0	0.0	100.0
서비스업	12	11	23	52.2	47.8	100.0
기타	5	5	10	50.0	50.0	100.0
합계	1,040	173	1,213	85.7	14.3	100.0

설문응답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24.5%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평균적인 근무기간이 짧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재의 직장에서 3년 이상 일한 응답자가 29.3%였으며, 5년 이상도 12.1%나 되었다.

근무기간은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제조업의 경우는 길었다. 업종과 근무기간을 모두 응답한 1,214명에 대해 업종별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표 II-5>와 같다.

<표 II-5> 업종별 근무기간 (n=1,214)

업종 \ 기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년 미만	296	27.7	23	41.8	30	51.7	10	43.5	1	10.0	360	29.7
1~2년	269	25.2	11	20.0	11	19.0	4	17.4	3	30.0	298	24.5
2~3년	173	16.2	8	14.5	12	20.7	4	17.4	3	30.0	200	16.5
3~4년	108	10.1	5	9.1	1	1.7	0	0.0	1	10.0	115	9.5
4~5년	85	8.0	2	3.6	4	6.9	2	8.7	1	10.0	94	7.7
5년 이상	137	12.8	6	10.9	0	0.0	3	13.0	1	10.0	147	12.1
합계	1,068	100.0	55	100.0	58	100.0	23	100.0	10	100.0	1,214	100.0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무기간 1년 미만이 가장 많은 업종은 농축산어업(51.7%)이며, 서비스업(43.5%)과 건설업(41.8%)이 뒤를 잇고 있다. 반면, 근무기간 3년 이상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30.9%)이다. 농축산어업 종사자는 3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8.6%에 불과하고, 5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아예 없었다.

(2) 노동시간과 휴일

설문조사에서 노동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의 평균, 그리고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휴일수를 물었다. 이를 모두 답한 설문응답자 1,178명의 주간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54.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52시간, 6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구간을 끊어서 보면 <표 II-6>과 같다.

<표 II-6> 설문응답자의 주당 근무시간 (n=1,178)

1주 근무시간	인원수 (명)	비율 (%)
40시간 미만	35	3.0
40시간	108	9.2
40시간 초과 ~ 52시간 이하	359	30.5
52시간 초과 ~ 68시간 이하	585	49.7
68시간 초과	91	7.7
합계	1178	100.0

설문응답자의 1주일 평균 휴일은 1.3일 (n=1,211, 무응답 4명)이었으며, 일주일에 1일을 쉬는 응답이 49.5%로 가장 많았다. 일주일에 2일을 쉬는 경우가 37.1%로 뒤를 이었으며, 그 다음은 한 달에 2일(7.7%), 한 달에 1일(2.7%)이었다. 휴일이 없다는 응답도 1.4% 있었다.

노동시간과 휴일을 모두 응답한 1,178명에 대해 업종별 주 평균 노동시간과 휴일을 계산하면 <표 II-7>과 같았다.

<표 II-7> 업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및 평균 휴일 (n=1,178)

업종	노동시간 (시간/주)	휴일 (일/주)	유효 인원수
제조업	53.9	1.4	1,034명
건설업	55.9	1.1	55명
농축산어업	61.2	0.7	57명
서비스업	58.2	1.1	23명
기타	47.2	1.5	9명
전체 평균	54.4	1.3	1,178명

기타 업종을 제외하면 제조업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 53.9시간으로 가장 짧고, 농축산어업이 61.2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반면, 휴일은 농축산어업이 1주일에 0.7일로 가장 짧고, 제조업이 1.4일로 가장 길었다.

(3) 임금

설문조사에서 임금은 지난 3개월간의 평균 실수령액(세금, 보험료, 숙식비 등 직장에서 공제되는 돈을 제외한 금액)으로 물었지만, 사람에 따라 실수령액을 적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임금을 응답한 1,184명의 평균 월급은 2,001,079원이었다.

평균 노동시간 주 54.4시간을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40시간은 최저임금, 14.4시간은 연장 가산수당을 적용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되, 3개월 미만 근무자 102명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응답자들은 2,261,928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서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비용을 제하면 2,039,058원이 나온다. 그런데 월급의 평균이 2,001,079원이므로, 결국 설문에 응답한 이주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8)

<표 II-8> 응답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으로 계산한 월급과 실제로 응답한 월급의 차이 (n=1,184)

노동시간 (시간/주)	노동시간으로 계산한 최저 월급 (원)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계산한 실수령액	응답한 월급 평균
54.4	2,261,928	30,660	101,740	75,770	14,700	2,039,058	2,001,079

월급, 업종, 성별을 모두 응답한 1,183명을 대상으로 업종별 평균 임금을 계산한 결과, 업종별 평균월급은 건설업이 제일 높아 2,167,037원이었으며 그 다음은 제조업으로 2,015,632원이었다. 농축산업은 가장 낮은 1,670,088원이었다.

성별에 따른 임금은 모든 업종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30만원(299,585원)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서비스업에서 그 차이가 449,242원으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은 건설업 433,077원, 농축산어업 298,417원이었다. 제조업에서는 차이가 229,539원으로 가장 작았다. (표 II-9)

<표 II-9> 업종별 성별 평균 월급 (n=1,183)

업종	평균 월급 (원)	남성 평균 월급 (원)	여성 평균 월급 (원)	월급차이 (남성-여성)	유효 인원수 (명)		
					전체	남성	여성
제조업	2,015,632	2,042,143	1,812,604	229,539	1,039	919	120
건설업	2,167,037	2,183,077	1,750,000	433,077	54	52	2
농축산어업	1,670,088	1,832,385	1,533,968	298,417	57	26	31
서비스업	1,843,478	2,058,333	1,609,091	449,242	23	12	11
기타	1,842,000	1,980,000	1,704,000	276,000	10	5	5
전체 평균	2,001,080	2,043,877	1,744,292	299,585	1,183	1,014	169

그런데, 업종별 또는 성별에 따른 월급의 차이는 노동시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업종은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데(61.2시간) 평균 월급은 가장 낮으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

시간이 가장 짧는데(55.9시간) 평균 월급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니, 월급의 차이는 결국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종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무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업종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노동시간은 동일하게 54.4시간이 나왔다. 그리고 업종을 나누어 보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월급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0만원을 적게 받고 있다. 결국 여성은 전반적으로 남성과 비슷하거나 더 오래 일하면서 월급은 적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0)

<표 II-10> 업종별 성별 평균 월급 및 노동시간 (n=1,183)

업종	평균 월급 및 노동 시간	남성	여성	차이 (남-여)	유효 인원수 (명)		
					전체	남성	여성
제조업	2,015,632	2,042,143	1,812,604	229,539	1,039	919	120
	54.0	54.1	52.0	2.1			
건설업	2,167,037	2,183,077	1,750,000	433,077	54	52	2
	56.0	55.7	63.5	-7.8			
농축산어업	1,670,088	1,832,385	1,533,968	298,417	57	26	31
	61.1	60.4	61.6	-1.2			
서비스업	1,843,478	2,058,333	1,609,091	449,242	23	12	11
	58.2	65.2	50.5	14.7			
기타	1,842,000	1,980,000	1,704,000	276,000	10	5	5
	47.2	44.9	49.1	-4.2			
전체 평균	2,001,080	2,043,877	1,744,292	299,585	1,183	1,014	169
	54.4	54.4	54.4	0.0			

(4) 최저임금 수령 여부 및 임금 인상 여부

현재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지 물었을 때, 50.9%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지만, 36.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2.3%는 모른다고 답했다. (1명 무응답)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수령여부를 살펴보면 기타 업종을 제외하고 제조업 종사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건설업 38.2%, 서비스업 30.4%, 농축산어업 25.9% 순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농축산어업에서 53.4%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응답은 서비스업에서 26.1%로 가장 높았다.

성별에 따른 최저임금 수령여부를 살펴보면 남성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비율이 52.8%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48.6%로 높았다.

업종과 성별을 함께 놓고 보았을 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기타업종을 제외하고는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74.2%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성으로 58.3%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었다.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표 II-11> 업종별 성별 최저임금 수령 여부 (n=1,211)

업종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 미만			모름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제조업	511	56	567	322	56	378	108	12	120	941	124	1065
	54.3%	45.2%	53.2%	34.2%	45.2%	35.5%	11.5%	9.7%	11.3%	100.0%	100.0%	100.0%
건설업	21	0	21	24	0	24	8	2	10	53	2	55
	39.6%	0.0%	38.2%	45.3%	0.0%	43.6%	15.1%	100.0%	18.2%	100.0%	100.0%	100.0%
농축산어업	10	5	15	8	23	31	9	3	12	27	31	58
	37.0%	16.1%	25.9%	29.6%	74.2%	53.4%	33.3%	9.7%	20.7%	100.0%	100.0%	100.0%
서비스업	2	5	7	7	3	10	3	3	6	12	11	23
	16.7%	45.5%	30.4%	58.3%	27.3%	43.5%	25.0%	27.3%	26.1%	100.0%	100.0%	100.0%
기타	4	2	6	1	2	3	0	1	1	5	5	10
	80.0%	40.0%	60.0%	20.0%	40.0%	30.0%	0.0%	20.0%	10.0%	100.0%	100.0%	100.0%
합계	548	68	616	362	84	446	128	21	149	1038	173	1211
	52.8%	39.3%	50.9%	34.9%	48.6%	36.8%	12.3%	12.1%	12.3%	100.0%	100.0%	100.0%

설문조사에서 2018년의 평균 월급이 2017년의 평균 월급보다 많아졌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1,215명 중 무응답 1명, 2017년에 일하지 않은 사람 79명을 제외한 1,135명의 응답을 살펴보면, 52.5%(596명)는 많아졌다고 답했고, 36.1%(410명)는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11.4%(129명)는 오히려 적어졌다고 답했다. 결국 절반에 가까운(47.5%) 이주노동자는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월급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평균 월급의 인상 여부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53.5%가 오른 반면, 농축산어업은 49.1%, 서비스업은 47.6%가 올랐으며, 건설업은 30.0%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이주노동자의 과반수가 평균 월급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표 II-12)

<표 II-12> 업종별 임금인상 여부 (n=1,132)

업종	많아졌다	같거나 비슷하다	적어졌다	합계
제조업	534	349	115	998
	53.5%	35.0%	11.5%	100.0%
건설업	15	25	10	50
	30.0%	50.0%	20.0%	100.0%
농축산어업	26	24	3	53
	49.1%	45.3%	5.7%	100.0%
서비스업	10	9	2	21
	47.6%	42.9%	9.5%	100.0%
기타	7	3	0	10
	70.0%	30.0%	0.0%	100.0%

합계	592	410	130	1132
	52.3%	36.2%	11.5%	100.0%

(5) 2017과 2018년의 노동조건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

설문조사에서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었을 때, 1,215명 중 무응답 34명, 2017년에 일하지 않은 79명을 제외한 1,102명이 복수응답을 했다. 그 결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45.4%(500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상여금(보너스)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36.3%, 400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숙소비 또는 식비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 응답은 18.1%(200명)로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았다.

<표 II-13>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달라진 노동조건 (n=1,102, 복수응답)

2018년에 달라진 노동조건	인원수 (명)	비율 (%)
시간당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140	12.7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 했지만 7,530원보다는 적다	107	9.7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500	45.4
상여금(보너스)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	400	36.3
2017년에 내지 않던 숙소비나 식비를 내기 시작했다	200	18.1
2017년에 비해 숙소비나 식비로 내는 금액이 늘어났다	60	5.4
2017년에는 식대를 지급받았지만 2018년에는 아니다	81	7.4
기타	187	17.0

(6) 응답자들의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식 답변과 기타 부연 설명 중에서

○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

“작년에는 한 번에 10만원씩 보너스 2번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너스 없어요. 우리 기숙사는 아파트예요. 한 방에 3명 살아요. 작년에는 우리 기숙사비 안 내고 인터넷, 가스비, 전기요금만 냈어요. 올해부터 기숙사비 한 명 80,000원씩 내요. 인터넷, 가스비, 전기요금 합치면 1명이 1달에 150,000~180,000원 정도 내요. 원룸이 한 달에 250,000원쯤 하나까 원룸으로 이사하는 게 낫겠어요. 옛날에는 식비도 안 냈어요. 요즘에는 한 끼 먹으면 2,000원 내요. 하루에 만약에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으면 6,000원 내요. 식사는 김치, 밥, 국, 계란 줘요. 고기는 1주에 한 번만 있어요. 시급은 올랐지만 많이 빠져 결국 월급은 똑 같아요.” (태국 제조업 여성)

“지금까지는 기숙사비 없었는데 앞으로 인터넷, 가스비 포함해서 기숙사비로 월15만원을 내야 한다. 시급이 올라가도 결국 쓰는 돈은 더 많은 것 같다.”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남성)

“월급이 올랐지만 회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숙소비와 식비를 올렸다. 원래 한 달에 50,000원만 냈는데 지금 한 달에 200,000원을 내야 한다. 올해 월급이 올랐지만 작년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없다.” (수원033 태국)

“올해 시급은 8,0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상여금은 30만원이던 것이 10만원으로 줄었다. 작년에는 하루 4,000원의 식대를 지급했는데 올해는 식사를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제조업 남성)

“2017년에는 야간일이 많이 있었는데 2018년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야간일이 없어요. 2018년부터 월급에서 기숙사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2018년 월급이 줄었습니다.” (캄보디아 제조업 남성)

“빨간 날에 일을 하지 않는 대신 회사에서 그 날 일당을 월급에서 공제한다. 2018년 전에는 공휴일에 쉬어도 기본급을 지급했었다.” (방글라데시 제조업 남성)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월급이 똑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급이 많이 올랐는데 월급이 오르지 않았습시다.” (방글라데시 제조업 남성)

“작년에 비해 일이 별로 없다.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식비와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을 내야 한다. 월급은 비슷한데 생활비를 더 많이 내게 되었다.” (캄보디아 제조업 남성)

○ 월급 계산이 맞지 않는다

“월급 계산이 안 맞아요. 쉬는 시간이 짧아요(20~30분). 티타임 없고 일 할 때 필요한 장비들 잘 안 챙겨줘요. 한 번 일하다가 사고 난 적 있었는데 병원비 안 내주고 오히려 월급에서 뺐어요. 사장님 거짓말쟁이. 야간, 주간 하는데 월급이 똑같아요. 집세, 식사, 전기세, 물세 제가 다 내요.” (필리핀 제조업 남성)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사장님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일한만큼 월급 받는 걸로 만족하는데, 주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일 안 하고 싶습니다. 회사를 바꾸고 싶습니다.” (미얀마 제조업 남성)

“올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렸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3월부터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3월과 4월에도 주지 않았다. 야간 근무 수당도 주지 않는다.” (필리핀 제조업 남성)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데, 그 시간을 연장근무로 쳐주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제조업 남성)

“하루에 10시간 일하지만 2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넣지 않고 하루 8시간 노동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만입니다.” (캄보디아 농축산업 여성)

“휴일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다. 하루에 10시간, 11시간, 12시간을 일하지만 노동부 기준에 맞는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다.” (스리랑카 어업 남성)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 되어 있는데, 하루에 9시간 반, 10시간 근무했다. 점심시간도 35-45분밖에 없다.” (캄보디아 농축산업 여성)

“일하는 시간은 12시간인데 근무카드를 10시간만 찍는다.” (네팔 제조업 남성)

“12시간 일하는데 쉬는 시간 30분밖에 안 주고, 월급은 1시간치가 모자라요. 월급 계산이 안 맞고 매월 월급이 안 맞아요.” (필리핀 제조업 남성)

“연차 휴가(15일)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수당도 주지 않는다.” (스리랑카 제조업 남성)

“사장님이 우리의 국민연금을 내주지 않았어요. 잔업수당 잘 안주고 특근수당도 안 줘요. 노동부에서 이런 문제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필리핀 제조업 남성)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가 많은데 공단에 내는 금액은 그것보다 적다.” (방글라데시 제조업 남성)

○ 법을 지키지 않는데 감독도 하지 않는다

“원래 한국 노동법이 좋은데 회사 고용주들이 법대로 안 해요.” (필리핀 제조업 남성)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는 벌을 주면 좋겠어요. 사업주가 여러 번 노동법을 안 지키고 있으니 다음에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태국 제조업 남성)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있는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다.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국 제조업 남성)

“가끔씩 공공 기관에서 와서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온 적이 없다.” (네팔 농축산업 여성)

○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하는지 잘 모르겠다. 임금명세서를 안 받는다. 매달 임금명세서

를 주면 좋겠다.” (캄보디아 제조업 남성)

“숙소비나 식비를 아직은 공제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월급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불된 내용이나 공제된 내용을 모른다.” (태국 제조업 여성)

“임금에서 무슨 명목으로 얼마나 공제하는지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 사업주에게 물어 보았더니 큰소리를 질렀다.” (태국 제조업 남성)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안주고 공제내용에 대해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 매월마다 공제금이 다르고 급여 지급액도 맞지 않는다.” (태국 제조업 남성)

“우리 공장은 계약서의 근무시간 시작 시간 전에 일을 시작한다. 또 야근시간을 잘못 계산한다. 월급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를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 (몽골 제조업 남성)

“월급 안 맞을 때, 불평하면 화를 내요.” (필리핀 제조업 남성)

“한 달에 약 총 45만원을 공제한다.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되는 비용도 많아지는 것이 의문이다.” (캄보디아 제조업 남성)

○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라고 한다

“기계보다 빨리 일해도 이 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라 할 때 마음이 아프다.” (네팔 제조업 남성)

“저는 고기의 각을 뜨고 뼈를 바르는 일을 합니다. 하루 8시간으로는 모자란데 사장님은 야간 안 시켜요. 야간 안하고 하루 만에 일을 다 끝내려고 더욱 더 빨리빨리 일해서 몸이 너무 힘들어요. 일 자체가 힘든데 빨리 빨리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저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기 싫은데 몸이 아파서 다니고 있어요.” (필리핀 제조업 남성)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근무시간은 줄었고 일하는 양은 더 많아졌다. 쉬는 시간에 관리자가 못 쉬게 하고 계속 일을 하라고 한다.” (캄보디아 제조업 남성)

“사장님 말로는 2018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2017년보다 생산물량이 더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얀마 제조업 남성)

“2017년보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하는 데 부담이 큼니다. 잔업이 줄었는데 일을 빨리,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팔 제조업 남성)

“월급이 올랐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시켜서 힘들다.” (네팔 제조업 남성)

“잔업은 줄었는데 기본 노동시간에 해야 하는 일은 더 많아졌다.”(파키스탄 제조업 남성)

“일을 빨리 하지 않으면 때립니다.” (방글라데시 제조업 남성)

“작업시간은 줄어들고 작업량은 늘어났다.” (캄보디아 제조업 남성)

“연장시간은 줄이면서 작업량은 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캄보디아 제조업 남성)

3) 숙식조건

(1) 숙소의 유형

설문응답자의 85.5%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기숙사 비율은 농축산업에서 94.8%로 타 업종에 비해 특히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은 52.2%로 낮은 편이었다.

기숙사의 유형을 주거용 독립건물, 작업장 부속 건물, 임시 가건물로 나누어 물은 결과는 <표 II-14>와 같다.

<표 II-14> 업종별 기숙사 유형 (n=1,033)

업종	주거용 독립건물		작업장 부속 숙박 공간		임시가건물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		기타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제조업	400	43.5	371	40.3	146	15.9	3	0.3	920	100.0
건설업	21	51.2	8	19.5	11	26.8	1	2.4	41	100.0
농축산업	17	34.7	13	26.5	18	36.7	1	2.0	49	100.0
어업	5	83.3	0	0.0	1	16.7	0	0.0	6	100.0
서비스업·기타	10	58.8	4	23.5	1	5.9	2	11.8	17	100.0
합계	453	43.9	396	38.3	174	17.1	7	0.7	1033	100.0

기숙사의 유형은 작업장에 부속된 숙박용 공간이 38.3%,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가건물이 17.1%였다. 다시 말해 장기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임시 주거용 공간이 55.4%로 주거용으로 지어진 독립된 건물(43.9%)보다 더 많았다.

특히 농축산업에서 주거용으로 지어진 독립된 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은 34.7%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고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가건물의 비율이 36.7%로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높아서 주거 환경이 열악함을 예상할 수 있었다. 임시가건물 중에서도 비닐하우스로 답한 응답자가 3명이었는데 모두 농축산업 종사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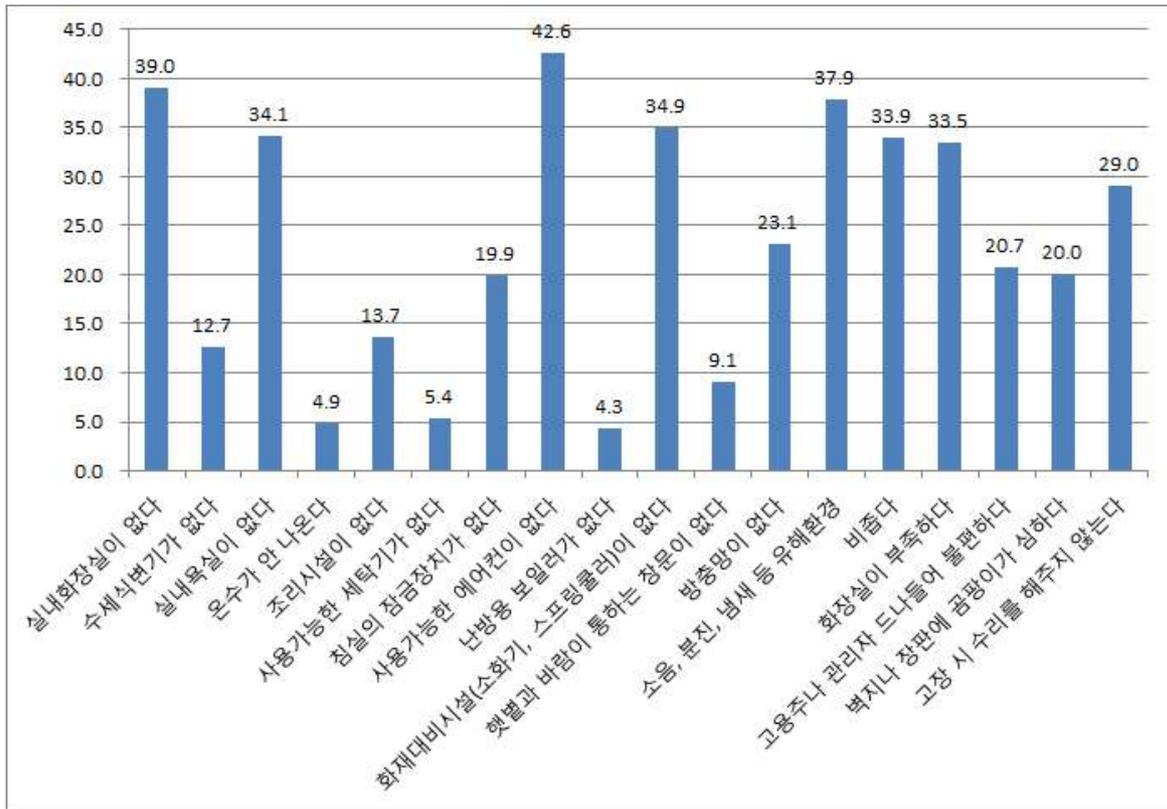
한편, 기숙사가 회사나 공장 안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67.9%였다.

(2) 숙소의 조건 및 상태

기숙사의 침실을 함께 쓰는 사람의 수는 평균 2.4명이었으며, 하나의 침실에 2명이 거주하는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4명 이상이 한 방에 거주한다고 답한 비율도 14.7%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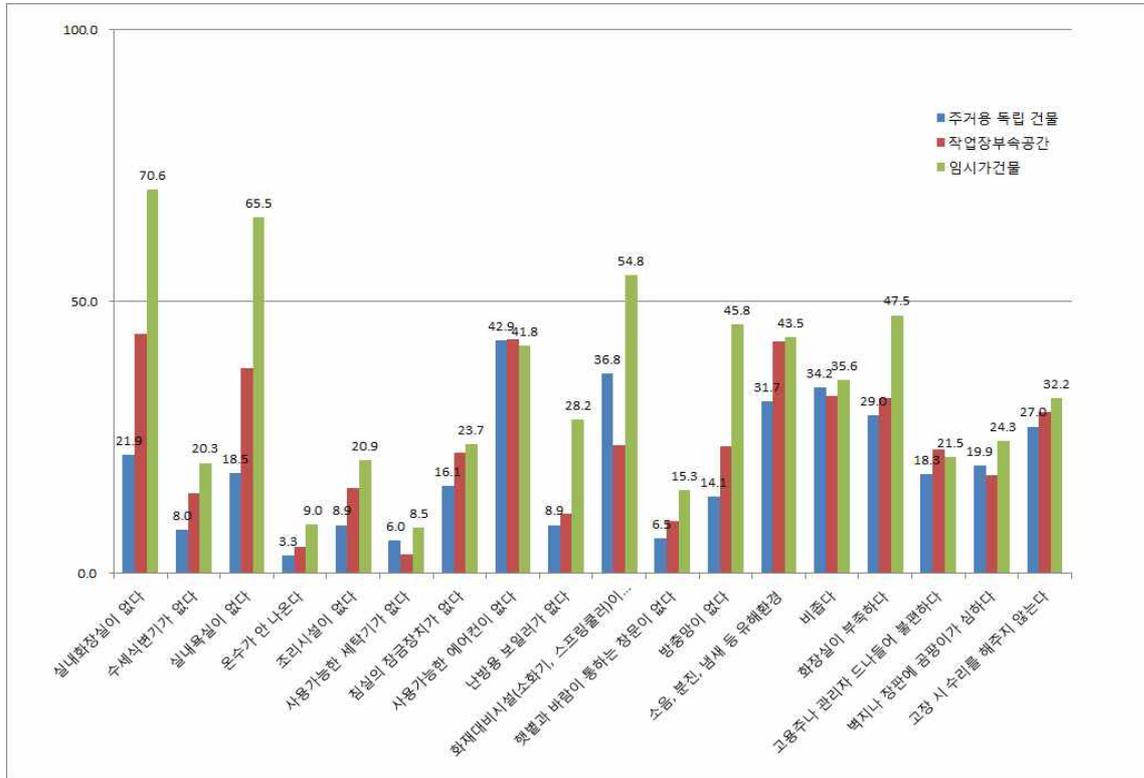
기숙사에 거주하는 1,039명 중 1,018명이 숙소의 상태에 대해 응답했다. 42.6%는 에어컨이 없다, 39.0%는 화장실이 실내에 없다, 34.9%는 소화기 등 화재대비 시설이 없다, 34.1%는 욕실이 실내에 없다, 23.1%는 방충망이 없다, 19.9%는 침실에 잠금장치가 없다, 13.7%는 조리시설이 없다고 답했다. 소음, 분진, 냄새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응답은 37.9%였으며, 침실이 비좁다 33.9%, 화장실이 부족하다 33.5%, 시설이 고장나도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 29.0%, 고용주나 관리자가 드나들어 불편하다 20.7%, 벽지나 장판에 곰팡이가 심하다 20.0%는 등의 응답도 높은 편이었다. (그림 1)

<그림 1> 숙소의 상태 (단위: %) (n=1018)



숙소의 유형별로 숙소의 조건을 살펴보면, 임시가건물이 가장 열악하고, 그 다음이 작업장 부속 공간, 주거용 독립 건물 순이었다. (그림2, 표 II-15)

<그림 4> 숙소유형별 숙소의 상태 (n=1,018)



<표 II-15> 숙소유형별 숙소의 상태 (n=1,018)

	주거용 독립 건물	작업장 부속공간	임시가건물	합계
실내화장실이 없다	21.9	44.0	70.6	39.0
수세식변기가 없다	8.0	14.8	20.3	12.7
실내욕실이 없다	18.5	37.7	65.5	34.1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	3.3	4.8	9.0	4.9
조리시설이 없다	8.9	15.8	20.9	13.7
사용가능한 세탁기가 없다	6.0	3.6	8.5	5.4
침실의 잠금장치가 없다	16.1	22.1	23.7	19.9
사용가능한 에어컨이 없다	42.9	43.0	41.8	42.6
난방용 보일러가 없다	8.9	10.9	28.2	4.3
화재대비시설(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이 없다	36.8	23.7	54.8	34.9
햇볕과 바람이 통하는 창문이 없다	6.5	9.7	15.3	9.1
방충망이 없다	14.1	23.4	45.8	23.1
소음, 분진, 냄새 등 유해환경	31.7	42.7	43.5	37.9
비좁다	34.2	32.6	35.6	33.9
화장실이 부족하다	29.0	32.3	47.5	33.5

고용주나 관리자 드나들어 불편하다	18.3	22.9	21.5	20.7
벽지나 장판에 곰팡이가 심하다	19.9	18.1	24.3	20.0
고장 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	27.0	29.8	32.2	29.0
응답자 (명)	448	393	177	1,018

(3) 숙소비 지불 여부 및 금액

기숙사에 살면서 사업주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이나 월급의 일정한 비율을 숙소비로 지불하는 비율은 38.4%였으며, 7.0%는 공과금만 낸다고 답했다. (표 II-16) 그런데 숙소 조건이 열악한 농축산업에서 숙소비를 낸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4.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높았다.

<표 II-16> 숙소비를 내는지 여부 (n=1,036)

숙소비 지불 여부	합계	
	명	%
일정 액수 혹은 일정 비율의 숙소비 낸다	398	38.4
공과금만 낸다(숙소비 금액에 금액을 표기)	165	15.9
숙소비를 내지 않는다	469	45.3
기타	4	0.4
합계	1,036	100

숙소비를 낸다고 답하고 액수를 표기한 사람 379명의 숙소비 평균은 137,997원이었다. 그런데 농축산업 종사자의 숙소비 평균은 203,200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높았다. (표 II-17)

<표 II-17> 숙소비 액수 (n=379, 단위: 원)

	중간값	평균
전체	105,000	137,997
제조업	100,000	134,339
건설업	120,000	110,000
농축산업	134,000	203,200
서비스업·기타	130,000	197,143

(4) 근무 중 식사의 비용

회사에서 근무 중 한 끼 이상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식대를 지급받는 비율은 82.5%였다. 식사를 제공받는 대신 식비를 내야한다고 한 비율은 9.1%로 비교적 낮았다. 식사를 제공받지도 않고, 식대를 지급받지도 않는다고 한 비율은 8.4%였다. 식비를 내는 사람의 식비의 중간값은 100,000원, 평균은 110,901원이었다. 그런데 농축산업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거

나 식대를 지급받는 비율이 46.2%로 제조업 84.4%에 비해 매우 낮았다. 반면, 농축산업에서 노동자가 근무 중 식사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비율은 42.3%로 제조업 6.8%에 비해 매우 높았다.

(5) 근무 중 식사에 대한 평가

근무 중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에 대한 평가는 <표 II-18>과 같다.

<표 II-18> 근무 중 하게 되는 식사에 대하여 (n=1,110, 중복응답)

	식비를 내지 않는 경우		식비를 내는 경우		합계	
	명	%	명	%	명	%
식사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484	50.9	27	17.0	511	46.0
식사 시간이 부족하다	66	6.9	21	13.2	87	7.8
음식의 양이 부족하다	43	4.5	12	7.5	55	5.0
음식의 질이 좋지 않다	162	17.0	43	27.0	205	18.5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	196	20.6	56	35.2	252	22.7
합계	951	100.0	159	100.0	1110	100.0

“식사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가 식비를 내지 않는 경우는 50.9%로 낮지만 식비를 내는 경우는 17.0%로 낮아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 식사에 대한 불만 또한 식비를 내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회사 제공 식사에 대한 불만은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 22.7%, “음식의 질이 좋지 않다” 18.5%, “식사 시간이 부족하다” 7.8%, “음식의 양이 부족하다” 5.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식사에 대한 불만으로 “돼지고기가 나와서 계란, 김으로 바꿔 주면 좋겠다.”,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돼지고기가 자주 나와서 계란프라이라도 주면 좋겠다.”, “깨끗하지 않다.”, “때에 따라 다르다.”, “종종 늦게 식사를 한다.”, “살기 위해 먹는다.”, “매운 음식이 많아서 위가 아프다.”, “회사에서 빵을 준다.”, “야채가 너무 많다.”, “늦게 가면 밥이 없다.”, “지난 8년 동안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줄곧 3,500원이었다.” 등이 있었다.

(6) 응답자들의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식 답변과 기타 부연 설명 중에서

○ **숙소와 식사**

“회사가 식용유, 쌀, 소금, 양념만 줘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다른 것 줘야 하는데 맨날 김치 먹어요. 생선도 좀 줘요면 좋겠어요. 방 너무너무 좁아요. 컨테이너예요. 그리고 다른 방에서 말하면 다 들려요. 잠을 제대로 못자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못 먹고 못 자기 때문에 힘이 없는데도 화장실에 갈 때 등산해야 해요. 화장실 너무 멀어요. 샤워도 산에서 해야 해요.” (방글라데시 제조업 남성)

“밖에 나갈 때 택시 타고 오고 택시 타고 기숙사에 가요. 버스 없어요. 돈이 많이 나와요.”

회사 너무 외진 곳에 있어요. 종교 때문에 혼자 기숙사에서 밥 해 먹어야 해요. 식당에서 돼지고기 자주 나와요. 그냥 김치하고 밥 같이 먹어요. 화장실 너무너무 멀어요. 화장실이 산 위에 있어요. 한 방에 3명 살아요. 옆에 소리도 다 들려요. 방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컨테이너 숙소예요. 한국 좋아요. 한국 이빠요. 한국사람들 좋아요. (방글라데시 제조업 남성)

○ 숙소

“기숙사를 같이 쓰는 사람이 많은데 샤워실이 1개 있다. 샤워실에서 온수를 쓰려면 물을 받아서 달군 쇠를 넣고 데워야 한다. 앞 사람이 씻고 다음 사람이 씻으려면 물이 차가워진다. 다시 물을 데워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은 차레를 기다려서 물 데우고 씻고 하느라 잠을 늦게 자게 된다. 화장실도 안 좋다.” (컨테이너, 침실인원 3명 미얀마 제조업 남성)

“숙소가 너무 좁습니다.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한 시간에 에어컨을 켜주지 않습니다. 숙소에 제 손님이 올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손님에게 창피하고 미안합니다.” (방글라데시 제조업 남성)

“기숙사비가 너무 비쌉니다. 일터에서 숙소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방에서 화장실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주야 교대 근무를 하는데 잠도 제대로 못자고 힘듭니다. 어디 갈 때는 택시나 버스를 타야 하는데 정류장이 너무 멀고 차도 잘 안 와서 불편합니다. 사장님은 기숙사에 친구들 못 놀러오게 합니다. 사장님이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캄보디아 제조업 남성)

“기숙사와 작업장이 같은 장소에 있어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특근 없고, 잔업도 없습니다. 쉬는 날에는 회사의 경비 역할을 해야 합니다. 택배가 오면 전화로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인천034 미얀마)

“시내의 공사장에서 일하면 숙소는 원룸으로 되어 있지만 외진 곳에서 공사할 때는 조립식 숙소에서 생활한다.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덥다. 따뜻한 물도 안 나온다. 더럽고 사람이 사는 숙소가 아닌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 (중국 건설업 남성)

“여관을 임대해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작년 11월 이전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11월부터 가스 설치 후 온수가 나온다.” (중국 건설업 남성)

“주야간 다같이 일 안 할 때 기숙사 너무 비좁아요. 한 방에 3명 자요. 너무 좁아요. 주간, 야근할 때 괜찮아요.” (4명 주간, 5명 야간, 스리랑카 건설업 남성)

“샤워실과 화장실이 방하고 가깝거나 방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겨울에 너무 추워요.” (네팔 제조업 남성)

“기숙사에 미얀마 사람 5명, 한국 사람 3명 있는데 화장실 1개, 샤워실 1개만 있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차례 기다려서 샤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미얀마 제조업 남성)

“기숙사가 작업장하고 너무 가까워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같은 방 쓰는 사람하고 주야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서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얀마 건설업 남성)

“숙소가 너무 시끄럽고 화학물질 냄새가 많이 난다.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회사내 숙소, 몽골 제조업 남성)

“비가 내리면 우리 방 물 많이 있어요.” (태국 제조업 남성)

“부엌이 없으니까 주말에 음식을 해먹지 못해서 불편합니다.” (미얀마 제조업 남성)

“창문이 있지만 바람보다 먼지가 많이 들어와요. 방충망이 있어도 벌레가 들어와요.” (네팔 제조업 남성)

○ 식사

“식사가 너무 안 좋아요. 매일 김치, 야채만 주니 일할 힘도 없어요.” (중국 건설업 남성)

“식사 때 돼지고기가 나오면 우리처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란프라이라도 준비해서 주면 좋겠다.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을 하는데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힘내서 일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제조업 남성)

“식사의 양이 적어서 과자를 사 먹어야 합니다.” (미얀마 제조업 남성)

“야근할 때, 밤 9시~10시까지 일하는데 저녁을 제공하지 않아 배가 고프니다.” (캄보디아 농축산업 남성)

“점심 시간 1시간은 집에 가서 밥 차려 먹고 치우고 오면 끝나서 설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 여성 농축산업)

“주야간 일을 할 때 낮에만 식사를 주고 밤에는 주지 않는다. 2번 토요일에는 식사 주고 2번 토요일에는 일을 해도 식사를 주지 않는다.” (네팔 제조업 남성)

“반찬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 쌀밥만 먹어요.” (인도네시아 제조업 남성)

“공장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주변에 공장식당 밖에 없어요. 주말에 밥을 주다가 3월부

터 안 주기 시작했어요. 기숙사에 주방이 없어서 밥도 못 해 먹어요. 어쩔 수 없이 공장 식당에서 밥 먹고 돈을 내기 시작했어요.” (중국 제조업 남성)

(7) 숙식비 지불 방식

숙소비나 식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는지에 응답한 1,209명 중에서 회사에서 “숙소비나 식비를 별도로 내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71명(63.8%), “숙소비나 식비를 낸다”고 한 응답자는 421명(34.8%), “기타” 17명(1.4%)이었다. 기타에는 “숙소비 중 일부만 노동자가 부담한다” “사장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월급 전체를 주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기숙사비를 빼고 월급을 준다”, “월급명세서가 없어서 모른다” “근무시간으로 숙식비를 뺀다” “공제한다고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아직 공제를 안 하고 있다” 등이 있었다.

숙소비나 식비를 낸다고 한 421명 중 숙식비 지불 방식은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숙소비나 식비를 내라고 한다” 44명(10.5%), “임금에서 숙소비나 식비를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한다” 377명(89.5%)로 숙소비나 식비를 받는 경우 임금에서 먼저 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II-19)

<표 II-19> 숙소비나 식비를 내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 여부 (n=421)

임금 지급 후 숙식비 냄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합계
44	377	421
10.5%	89.5%	100.0

고용노동부는 숙식비 징수 지침을 발표하면서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를 징수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숙소비와 식비를 임금에서 먼저 공제한다는 377명에게 서면 동의서에 서명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임금에서 숙식비를 먼저 공제하고 있다” 157명(41.6%) 였으며, 숙식비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고용주가 시켜서 할 수 없이 서명했다” 는 응답도 15.9%(60명)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구두로 협상했다”,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 “한국어로 적혀 있어서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서명했다” 등이 있었다.

III. 마치면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이주노동자는 50.9%에 불과했고, 2018년 최저임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47.5%의 이주노동자는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여금이 없어지고 숙소비나 식비 등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과 평균 휴일에 맞추어 계산해 본 평균 월급 또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야간과 휴일 가산수당을 무시하고 4대 보험료를 모두 공제했다고 가정해도 그러했다.

2017년에 내지 않던 숙소비나 식비를 내기 시작했거나 그 금액이 늘어났다는 이주노동자는 거의 4명 중 1명이어서 숙식비를 이용해 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가 농축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향 또한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1인당 약 138천원을 내는 숙

소는 수년씩 장기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장 내 숙박공간이나 임시가건물이 55.4%에 달했다. 구체적인 숙소 상태의 열악함도 다른 실태조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짧은 설문지에 담아내기 어려웠던 질문을 대신하고자 설문지 맨 마지막 문항에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불만에 대해 주관식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추가했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설문지 한 가득 뽁뽁하게 가슴에 담아두었을 말들을 쏟아내었다. 그 말들을 모두 번역하느라 설문 분석 기간이 한 달 이상 길어졌을 지경이었다. 그 중 한 이주노동자의 말을 옮기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적절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10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노동자를 감옥에 있는 죄수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맞는 것을 맞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한국인 사장님들을 설득해주세요. 감사합니다.”